

아 이 다 호 주 한 인 회

회 칙

제 1 장 총칙

- 제 1 조 명칭: 본회는 미주 아이다호 주 한인회라 칭한다.
- 제 2 조 위치: 본회의 위치는 Boise에 두고 타 도시에도 지부를 둘 수 있다.
- 제 3 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한인으로서 궁지와 상부상조의 정신을 구현하고 아이다호 주 한인사회와 본국의 발전과 차세대 한인교육에 기여하고 아이다호 주 정부와의 유대를 강화하며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와 서북부 한인회 총연합회와의 교류를 강화한다.
- 제 4 조 회원자격: 만 18세 이상으로 본 지역에 1년이상 거주자로 하며 영주권자, 시민권자, 그리고 합법적인 신분의 아이다호 지역 거주자이어야 한다. 본회 회원은 총회에서 회비납부의 의무가 있으며, 발언권 및 선거권을 갖는다.

제 2 장 조직

- 제 5 조 임원: 본회에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상임고문: 명

고문: 명

감사: 2 명

회장: 1 명

부회장: 1 명 또는 2 명으로 한다.

이사: 7 명 이상

총무: 1 명

재무: 1 명

서기: 1 명

*.홍보부, 교육부, 사업부, 부녀부, 청년부, 문화부,

연예부, 임원은 1명의 부서장으로 두고 임원은
이사를 겸직 할수있다.

제 6 조 회장 선출 및 후보자 등록

1항. 회장후보자격: 아이다호 지역의 교민을 위한 봉사와 헌신을 다
할 수 있는 회원으로서 이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한 자로서 만
21세 이상의 합법적인 신분인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 이어야
한다. 단 결격사유(예 형사사건에 기소중인 중형 관련자)에 해
당되는 자는 자격이 취소된다. 또한 본 회 발전의 기여에 관한
명백하고 현저한 의무와 담보의 표시로서 본 회장 후보자의 등
록시 일금 \$500을 공탁하여야 하며 본회 회장 선거의 결과에
관계 없이 예치된 공탁금 반환에 관한 청구권을 행사 할 수 없
다.

2항. 후보자는 본회 가입회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선거년도 9
월 말 까지(60일전) 이사회에 제출 하여야 하며 이사회는 1항
에 의거하여 후보자 심사를 하며 참석 이사 과반수 원칙에 의

해 회장 후보자를 선정한다.

3항. 후보 등록자가 없을 시 후보 등록을 2주간 자동 연장 하도록 하며 연장 후에도 추가 등록자가 없을 경우에는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한다.

4항. 모든 회원은 제 1장 4조에 의해 1인 1표 선거권을 갖는다.

제 7 조 회장임기: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까지 할 수 있다.

단 보결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회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 8 조 이사선출: 이사는 7명 이상으로 하며 회장이 이사장을 임명하고 이사장은 이사회를 구성한다.

제 9 조 임원의 직무: 본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부회장 중에서 년장자가 직무를 대행하고 필요시 총무직을 대행할 수도 있다.

(3) 고문위원은 임원회에 참석하고 본 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자문한다.

(4) 이사는 이사회 구성 요원이 된다.

(5) 총무는 회장 지시에 의하여 모든 업무를 총괄 집행한다.

제 10 조 고문: 전임 회장은 자동으로 추대하며 또한 본 회원 중에서 타인

의 모범이 되고 덕망이 있는 자로써 회장단과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후보자의 허락 하에 고문의 역할을 담당하며 고문은 한인회 발전을 위하여 매년 \$ 300 을 납부한다.

제 3 장 회의

제 11 조 총회: 총회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권한: 총회는 회장을 선출하며 회칙 개정 및 이사회에서 상정된 사항을 심의한다.

(2) 종류: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정기총회는 년 1회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 회장이 소집한다.

(3) 소집: 총회의 소집은 서면, 전화, 혹은 전자메일을 통해 회의 소집 20일전에 공고 해야한다.

(4) 의장: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한다.

(5) 의결: 총회의 의결은 참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 12 조 이사회: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이사로서 구성한다.

(2) 권한: 이사회는 본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관장한다.

A. 본회의 기본 방침과 사업 계획에 관한사항.

B. 중요행사 및 중요경비 (경조사항 및 찬조금) 지출 행

위에 관한사항.

C. 총회의 소집에 관한사항.

D. 총회에서의 위임사항 및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소집: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직이사
1/3 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해야 한다.

(4) 의결: 이사회는 재직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의결은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5) 회비: 회원은 이사회에서 결정한 회비를 납부 해야 한다.

(6) 지출: \$5,000 초과의 특별지출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
다.

제 4 장 재정

제 13 조 경비: 본회의 경비는 연회비, 특별회비, 찬조금 및 기타로서
충당한다.

제 14 조 회비: 각종 회비의 정액은 이사회에서 정하며 년 회비는
한인회 총회시 또는 한인회 사무실에 납부한다.

제 15 조 수입금 및 회비보관

본회의 회비 및 기타 수입금 찬조금 및 특별회비는
한인회 명의로 은행에 예치한다.

전 수입금은 한인회를 위하여 쓰여진다.

제 16 조 경비지출: (부당지출) 의 책임

본회의 경비 및 금전에 대한 부당지출에 대해서는 회

장 및 재무부가 책임진다.

(1)일반지출: \$500 이하는 회장 및 재무 위원의 임의로 지출 할 수 있다.

(2)특별지출: \$500 초과는 임원회의를 통해서 결정하고, \$5,000이상은 이사회에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5 장 산하기관

제 17 조 한글학교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한인회 산하에 복수의 기관이나 단체를 둘 수 있다.

(2)산하기관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단체나 기구가 한인회에 신청하면, 한인회는 임원회의를 거쳐 의결하고 심사하여 결정한다.

(3)산하기관은 독립된 정관 (학칙 또는 회칙)에 의하여 운영한다.

(4)산하기관은 한인회에서 정한 소정의 특별회비를 매년 한인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5)각각의 산하기관은 인사와 재정에 관하여 독립된 권한을 가진다. 단, 세금보고와 관련한 사항에 관해서는 한인회가 필요로 하는 문서들을 공유한다.

(6)한인회 산하 모든 기관 및 단체들은 모두 평등한 권리를 누리는 동시에 한인회의 발전에도 기여할 의무가 있다.

제 6 장 회칙개정

제 18 조 제안: 본회 회칙개정의 제안은 이사회 또는 회원 10명 이상의 서명으로 총회에 상정한다.

제 19 조 의결: 본회 회칙 개정은 총회 출석인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

로 의결 한다.

제 7 장 부칙

제 20 조 관례의 준용: 본회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제 21 조 발효 : 본회 회칙은 총회 의결에 의해 발효한다.

제 22 조 표창 : 본회의 발전이나 한인의 권익옹호에 크게 공헌하였다고 인정되는 인사는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그 공로를 회장, 서북부 연합 총 회장, 또는 총영사 명의로 표창할 수 있다.
또한 대한민국 대통령 표창 추천도 한다.

별칙 : 본회의 목적에 크게 위반 되거나 발전에 유해한 언동을 한 회원을 이사회의 심의와 결의를 거쳐 그 권리를 제한 할 수 있다.

제 23 조 서무규정: 본회는 서무처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의 문서를 구비하고 5년간 보관한다.

- (1) 사업계획 및 집행에 관한 서류.
- (2) 재정에 관한 수입, 지출 대장 및 증빙서류.
- (3) 재산목록 과 비품대장.
- (4) 임원 및 이사회의 명부.
- (5) 회장단의 인계인수는 전조에 명시된 문서에 의거

정기총회 후 10일 이내에 행하며 이월금은 감사
입회 하에 총회에서 감사 보고 된 잔고 금액을
차기 회장에게 이월한다.

회칙 개정 위원:

이사장: 전 형원

이 사: 류 재현

이 사: 곽 종태

이 사: 조 민재

이 사: 박 알렉스

이 사: 박 영길

이 사: 김 유동

2019년 12월 15일